

<p>2000. 9 개관 예정)</p> <p><input type="checkbox"/>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관)</p> <p>※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명동2가 50-14, 2000. 5 개관 예정)</p> <p><input type="checkbox"/> 새로이 설치되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및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안 부칙)</p> <p>다. 참고사항</p> <p><input type="checkbox"/>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95조</p> <p>○ 제135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p> <p>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p> <p>○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p> <p>① ~ ②(생략)</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④(생략)</p> <p><input type="checkbox"/>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p> <p>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동수)</p> <p>○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1 자치구, 1 노인종합복지관 설치계획의 일환으로 건립하여 금년 7월중 개관예정인 강북, 금천, 성동, 도봉 노인종합복지관과 국·내외 청소년들간의 대화, 워크숍, 문화교류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입차하여 5월중 개관예정인 시립청소년 문화교류센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p>	<p>로의 설치근거를 정하고</p> <p>○ 동 조례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 민간위탁사무명에 상기 4개 노인종합복지관과 시립청소년 문화교류센터 관리운영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필요한 조치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p> <p>○ 다만, 향후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후 공사착공 또는 시설확보(취득 및 임대차)전에, 동 공공시설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의 건은 운영개시 전으로 각각 구분하여 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p> <p>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p> <p>5. 토론요지 : 생략</p> <p>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10명, 출석위원 6명 전원일치)</p> <p>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p>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p>-----</p> <p>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등"이라 한다)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데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p> <p>2.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되는 소기업</p>
--	--

<p>및 소상공인을 말한다.</p> <p>3. "기본재산"이라 함은 재단이 소기업 등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p> <p>4. "운영수입"이라 함은 재단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 등 기타수입을 말한다.</p> <p>5. "기금"이라 함은 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을 말한다.</p> <p>6. "신용보증"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을 말한다.</p> <p>제3조(설립 등) ① 재단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②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점 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p> <p>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의 출연금 5.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p>②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5조(신용보증 대상) 재단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소기업 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에 소재하는 소기업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로 인한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재단이 금전채무자가 되는 경우의 그 금전채무의 변제비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p>② 시장은 재단이 제1항의 각호의 1에서 정한 용도 외에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금을 전액 회수하여야 한다.</p> <p>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본점·지점 등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p>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조(업무) ① 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관리·운영 2. 소기업등에 대한 신용보증 3. 소기업등의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소기업등에 대한 경영지도 5.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재단이 금전채무자가 되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의 당해 소기업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 <p>② 재단은 제1항에 규정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9조(이익금의 처리) 매 사업년도의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의 보전 및 기본재산의 확충에 사용한다.</p> <p>제10조(회계년도) 재단의 회계년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p> <p>제11조(예산의 편성) ① 재단은 사업년도마다</p>
---	--

<p>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재단은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12조(예산의 결산) 재단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수입·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해산) ①재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병 또는 파산 2.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발생 <p>②재단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합병결의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p> <p>③재단이 해산할 경우 재단의 재산(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 변제후의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한다.</p> <p>제14조(경영평가) ①시장은 출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단의 경영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p> <p>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제15조(기금운용의 확인) 시장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p> <p>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재단에 인계하는 경우에는</p>	<p>그 인계와 동시에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은 해산되며, 이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에 납부된 각 출연금 등은 재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23조의7(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이하 이 조에서는 "재단"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p> <p>②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 조례안</p> <p>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1호 내지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6. "중소기업지원시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창업보육, 시제품·기술·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1. "유통사업자"라 함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2. "건설사업자"라 함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3. "관광호텔사업자"라 함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p>제4조제1항제5호를 동조동항제6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5.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p> <p>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p>
---	--